

-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이광호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78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2. 5.

라. 회부일자 : 2020. 2. 12.

2. 제안사유

- 어린이, 고령자 등의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,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위험성 등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
- 특히, 서울시의 경우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매우 부족하며,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 체험시설 대부분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, 어린이, 고령자 등이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7조,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9. 2. 17 ~ 2019. 2. 24
 - 제출의견 : 없음
-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 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: 수정동의
 - “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제3항 국가등은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 할수 있다”에 근거하여 제정 되는 조례안으로

-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하는 교통안전 체험 시설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
-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- 현재 대부분의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자치구청장 관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무를 시장에 계만 부여하기 보다는 자치구청별로 교통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하고자 함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동 제정조례안은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신설(안 제1조~제2조 관련)

-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¹⁾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,

현재 서울시에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3항²⁾에 따른 총 15개의 교통안전체험장³⁾이 있으나, 주로 자전거 위주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

1)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(서울시)

연 도	총 사고건수	교 통 약 자	
		고령자(65세이상)	어린이(12세이하)
2016년	6,734	5,219	1,515
2017년	6,823	5,357	1,466
2018년	7,092	5,761	1,331

※ 최근3년간 총사고건수는 **연평균2.6%증가**

- 2)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3항에서는 “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·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됨
- 3)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현황 : 총 15개소

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체험시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

- 또한,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제3항4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5)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의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
■ 시장의 책무 관련(안 제3조 관련)

-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,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조성 등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많은 교통약자들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안 제3조제3항에서 “시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으나, ‘권역’에

구 분	총 계	직 영	위 탁
개 소	15	4	11
해당 자치구 및 기관	-	동대문, 금천, 서초, 한강사업본부	성동, 중랑, 성북, 노원, 양청, 구로, 강서, 영등포, 관악, 송파, 강동

※ 상기 표기된 자치구 및 기관당 1개소씩 운영

- 4)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제3항에서는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됨
- 5)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에서는 “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”라고 규정됨

대한 지리적, 지역적 정의⁶⁾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권역의 범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⁷⁾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- 한편 관련법에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전거 안전 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무를 자치구청장에게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임

■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정보공개, 기능 및 설치기준(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)

- 안 제4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민에게 홍보 안내하여 시설의 이용률과 운영현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
- 안 제5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⁸⁾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며

시장이 교육대상자의 유형을 고려해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

-
- 6)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를 "권역"으로 규정
7)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시장이 권역별로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을 규정하고, 소방재난본부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민안전체험과 조성을 추진중
8)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및 방법(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)
1.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·장비를 갖추는 것
 2.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는 것
 3.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·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
 4.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

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

■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및 재정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 관련)

- 안 제6조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,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- 현재 교통안전 체험시설과 유사한 ‘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’의 경우 전체 15개소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중 11개소가 위탁운영⁹⁾되고 있고,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시설을 직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탁운영 방안 마련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
- 안 제7조는 시장이 자치구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례¹⁰⁾를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, 향후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

9) 각주3) “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현황” 참조

10) 서울시에서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'10~'17년까지 2,532백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함

※ 관련근거 : 요구자료 1580번

■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관련)

- 안 제8조는 시장 등이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·운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제3항11)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해당시설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관내 교육기관, 노인 복지시설,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동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

■ 기타 검토사항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,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시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 이후 별도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설치·운영 될 수 있을 것임

【 각 시설별 교육·체험내용 및 설치근거 】

구 분	시민안전체험관	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	교통안전체험관
교육 체 험 내 용	지진, 태풍, 화재, 버스 교통사고, 지하철 화재 체험	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	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(자전거 운전 포함)
설 치 근 거	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	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	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의 2
운 영 현 황	2개소(시 운영)	15개소 : 시1, 자치구 14	없음

11) 각주4) 참고

- 각 시설별로 개별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많은 시민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져 교육 및 체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나, 시설별로 기능과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있고 체험 및 교육시설의 설치·운영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관련법과 조례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